제4회 규제합리화위원회
민생분과 회의록

2026. 6. 15.

국 무 조 정 실
규 제 조 정 실

Ⅰ. 회의개요

○ 일　　시 : ‘26. 6. 15. (월)

○ 출석위원(13명)

- 민간위원 : 박용진 분과위원장, 박선규, 오균, 윤일홍, 이유정, 정서원, 차상훈 위원

- 정부위원 : 국조실, 노동부, 법제처, 복지부, 중기부, 행안부

Ⅱ. 상정안건

구분	의안번호	상정기관	의 안 명	구 분
①	2026-132	기후에너지환경부	「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개정안	의결안건

Ⅲ. 회의 결과

1. (의결) 「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개정안

(기후부, 2026-132호)

소관 부처	기후에너지환경부
규제사무명	1. 환경교육사 보수교육 기간 조정
논의내용	○ **(보수교육 주기 단축의 실효성)** 보수교육 **수료율이 급락**한 것으로 나타나 **교육 주기 단축의 실효성**을 재검토한 결과, - 이는 보수교육 수료율의 집계방식 문제로, 실제로는 **교육정원, 신청자 및 수료자 모두 증가 추세** - 또한, **▲환경 현안의 변동 주기**가 짧아지고 있고 ▲초등·중·고등학교, 공공기관까지 **환경교육이 확대**되고 있어, - **역량을 갖춘 환경교육사**를 다수 **확보**하기 위해 **보수교육 주기를 단축할 필요성**이 인정됨 ○ **(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의 충실성)** 피규제자인 **환경교육사** 의견의 수렴·반영 여부를 확인한 결과, - 개정안 마련 시 **환경교육사 2,060명**을 대상으로 한 **설문조사 결과를 반영**했음을 확인 ※ 향후 **환경교육사 대상 의견수렴** 절차 **지속 추진 필요** ○ **(수업 방식의 적정성) 교육 내용**(최신 환경 정책 동향, 환경윤리 등)을 고려할 때 **집합교육**(대면교육)**을 원칙으로 할 필요가 크지 않고,** - 양성기관의 수가 적어(15개) **교육을 수강하는 환경교육사의 시간·장소적 선택지가 제한적**이므로,

	- **원격교육**(온라인교육)**을 적극적으로 활용**토록 하고, 학회 참석 등을 **보수교육 이수시간**으로 **인정**하는 등 대안 검토 필요
위원회 결정 내용	▶ **보수교육 주기를 2년마다 6시간**으로 **조정**하는 안은 **원안동의** ○ 다만, **보수교육 이수의무 부담을 완화**할 수 있도록 **원격교육을 집합교육과 동등한 격으로 개정안에 포함할 것**을 **개선권고**